

# 기업집단현황공시 업무 매뉴얼 (동일인용)

2025. 4. 21.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 점 검 과

# 목 차

1. 제도의 개요	001
2. 주요 용어 설명	003
3. 공시의무 및 책임	007
4.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009
5. 공시절차	024
6. 수탁기관의 업무	026
7. 위반시 제재	027

## 1. 공시주체

- □ (공시의무자) 동일인
  - 국외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부과
    -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와 자연인이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

#### 2. 공시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해당)
  -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sup>\*</sup>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sup>①</sup>일반현황, <sup>②</sup>주주현황
    - \*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모두 포함
- □ 공정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와 자연인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sup>\*</sup>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sup>③</sup>일반현황, <sup>④</sup>주주현황, <sup>⑤</sup>계열회사 출자현황, <sup>⑥</sup>순환출자현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의미

## 3. 공시의 방법 및 절차

- □ (공시빈도) 연 1회 공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 □ (공시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 O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공시양식을 삭제 하고(혹은 양식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거나 공시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공시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시양식의 칸 또는 줄에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 으로 기재
  - O 제출방법

구 분	제출인	공시대상회사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	동일인이 지정한 소속회사 (예 : 대표회사 등)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동일인	동일인

\* 전자공시시스템 체계상 공시대상회사를 지정 후 공시자료 제출이 가능하므로, 편의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이 지정한 소속회사를 공시대상회사로 지정하여 공시하되, 공정 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공시 의무 및 책임은 동일인에게만 귀속됨

## 4. 법적 근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8조 제2항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특수 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 회사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공시하여야 함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제8항
  - 공시대상 국외 계열회사, 공시사항, 공시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O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O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O 위반행위별 과태료 산정기준 및 가중 감경사유 등을 규정

# 2 주요 용어 설명

#### 1. 동일인

□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

# 2. 동일인 관련자

- □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 2022. 12. 27.)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 O 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 친족
    - 혈족은 「민법」 제768조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 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인척은 「민법」 제769조에 따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일인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해당, 동일인 자녀의 배우자 부모(사돈)는 미해당]

- O 동일인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 ⇒ 기타친족
  -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 동일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다만, 동일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 가능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 O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을 말함
  -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의미

## 3. 기업집단

- □ 동일인이(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
  - \* 동일인등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 최다출자자이거나 임원 등을 통해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
  - O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2이상의 회사,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인 법인 외 1이상 회사

#### 4. 공시대상기업집단

□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6. 계열회사

- □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 국내 계열회사 또는 국외 계열회사 등 범위에 한정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라 하면 국내 및 국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 7. 소속회사 (속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8. 최대주주 (혹은 최다출자자)

- ☐ 계열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함
  - O 최대주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때 동일인 뿐만 아니라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함

## 1. 공시의무 적용대상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수 없는 경우는 제외
  -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와 자연인이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

#### 2. 예외사유

□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동일인의 공시의무 자체를 면제

#### < 동일인의 공시의무 면제사유 >

공정거래법 제28조 제2항 단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는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 동일인의 의식불명
- 2. 동일인의 실종선고
- 3. 동일인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 공시항목별 예외사유

#### < 공시항목별 공시 예외사유 >

공시항목	공시내용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회사 현황 (공정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① (총수일가) 국외계열회사 일반현황 ② (총수일가) 국외계열회사 주주현황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회사 현황 (공정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③ (국내출자) 국외계열회사 일반현황 ④ (국내출자) 국외계열회사 주주현황 ⑤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⑥ 국내외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 ①, ② 항목 공시의무 없음
- 2.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sup>\*</sup>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 년간(금년도 지정일 기준) 거래가 없는 국외계열회사에 대해 해당 친족이 ①, ② 항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보 제공을 거부한 해당 사항은 공시사항에서 제외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것
- \*\* 다만, 해당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 또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시의무 유지
- 3.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 : 해당 국외 계열회사는 ② 또는 ④ 항목 공시 제외
  - \* 다만 위 사유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주로 소재국 근거 법률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3. 공시책임

□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출자현황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미공시 등의 책임을 짐

# 4

#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 항목별 공시내용 및 공시빈도 >

공시항목	공시내용	공시빈도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회사 현황	① (총수일가) 일반현황 ② (총수일가) 주주현황	(건 1 장)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회사 현황	③ (국내출자) 일반현황 ④ (국내출자) 주주현황 ⑤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⑥ 국내외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연1회

①<u>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회사</u> 및 <sup>②</sup><u>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회사</u> 두 가지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회사는 위 ①~⑥ 항목 모두 공시

# 세부 공시내용

#### ① 일반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통상 5월 1일, 이하 같음)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 □ 작성방법

- 국외계열사 여부는 국내계열사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발행 주식의 30% 이상 최다출자자 혹은 실질 지배력 기준) 적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참고
- O 총수일가 지분율은 동일인 및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 \* [주의사항] 양식③의 내부지분율과는 달리 <u>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모두 포함</u>

## □ 예외사유

- O 친족만 출자한(=동일인 지분이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해당 친족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 해당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고, 직전 1년간(금년도 지정일 기준)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거래가 없다면 ⇒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음
  - 해당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하였거나, 직전 1년간(금년도 지정일 기준)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거래가 있다면 ⇒ 예외 없이 모든 사항 공시

#### <작성양식 1>

(금년도 지정일 기준)

국외계열회사명 대표자명			설립일	업종	총수일가 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D	2	3	4	5	6	7
합계	8	_	_	_	_	-	

- 1. ①에는 국외계열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명 또는 대표집행임원명을 당해연도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 단, 대표자가 집행임원인 경우 성명 옆에 "(집행임원)"을 붙임
- 3. ③에는 해당 회사의 설립일을 기재
- 4. ④에는 회사의 주력업종(또는 매출액 최다 업종)을 기재
- 5. ⑤에는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 \*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
- 6. ⑥에는 소재국을 간단하게 기재 (예: 미국, 일본, 영국 등)
- 7. ⑦에는 해당 회사의 결산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 8. ⑧에는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회사의 총 개수를 기재

## ② **주주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을 동일인 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등을 기재

#### □ 작성방법

- (동일인측 범주) 동일인, 배우자/혈족1촌, 혈족 2~4촌,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자기회사·국내계열회사·국내비영리법인), 자기주식, 계열회사(국내+국외) 등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 임원 기재방법

구분	기재방법
자기회사	등기임원제도가 있는 국가: 자기회사의 <u>등기된 임원으로서, 주주인 자</u> 에 대해 기재 등기임원제도가 없는 국가: <u>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9호·제12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u> 로서, 주주인 <u>자</u> 에 대해 기재
국내계열회사,	국내계열회사 및 국내비영리법인의 등기된 임원으로서,
국내비영리법인	<u>해당 국외계열회사의 주주인 자</u> 에 대해 기재

O (기타주주 범주) 동일인측이 아닌 최다출자자, 기타

## □ 예외사유

O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다만 위의 사유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주로 소재국 근거 법률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O 친족만 출자한(=동일인 지분이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해당 친족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 해당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고, 직전 1년간(금년도 지정일 기준)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거래가 없다면 ⇒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음
  - 해당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하였거나, 직전 1년간(금년도 지정일 기준)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거래가 있다면 ⇒ 예외 없이 모든 사항 공시

#### 이해돕기

#### ☞ 「상법」제317조 (설립의 등기)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8. <u>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u>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u>감사위원회 위</u>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양식 작성 돕기

#### ☞ 동일인측이 최다주주인 경우

- (1)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2) 동일인측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기타주주(⑫번 칸)에 기재
- ☞ 동일인측과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공동 최다주주이거나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최다주주인 경우
- (1)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2)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의 지분을 ⑪번 칸에 성명과 주식수를 기재
- (3) 기타 소액주주의 지분에 대해 ⑫번 칸에 기재

#### <작성양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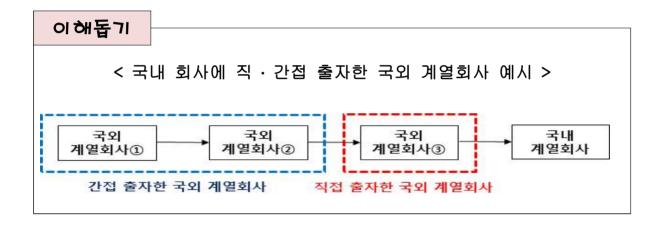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 소청)	1171		도이	인과의 관계	성명	보등	통주	우걱	선주	합	계
소속회	149		공일	인파의 판계	/ 강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일인	1	2	3	4	5	6	7
				배우자/							
				혈족1촌							
			· 친	혈족2~4촌							
			족	인척 3촌 이내							
		동 일		⑧ 기타친족							
固	A			⑨ 친족 합계	><						
금		인 측		비영리법인							
융 회	Α.	,		임원							
				자기주식							
사				계열회사							
				(국내+국외)							
				타 동일인관련자							
				① 동일인측 합계	><						
		기타		동일인측이 아닌 최다주주	11)						
		주주		 기타		(12)					
				총 계	>	(13)	100%	13	100%	13	100%
	В	R				10)	100/0	100	100/0	100	100/0
금융	C			•••							
회사	D			•••							
1.1							l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1. ①의 '동일인'이란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
- 2. ②(④)와 ③(⑤)에는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에 대한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 [동일인 보유 보통(우선)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 보통(우선)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3. ⑥에는 ②와 ④의 합계를, ⑦에는 A회사 발행 총 주식수(보통주+우선주)에 따른 지분율을 기재.
- 4. ⑧의 '기타친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 5. ⑨에는 A회사에 대한 친족(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인척 3촌 이내 및 기타친족)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6. ⑩에는 동일인측[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국내+국외), 기타 동일인 관련자]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7. ⑪에는 동일인측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최다출자자)명을 기재하고 해당 주주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A회사에 대해 동일인측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측'란에 동일인측 주식수와 지분율을, 최다출자자는 '기타주주-동일인 측이 아닌 최다출자자'란에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8. ②에는 A회사 주주 중 ⑩과 ⑪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 합계와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⑩을 제외한 기타 주주 전체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9. ⑬에는 A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를 기재

## ③ 일반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의미



## □ 작성방법

- 국외계열사 여부는 국내계열사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발행 주식의 30% 이상 최다출자자 혹은 실질 지배력 기준) 적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참고
- 내부지분율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u>의결권 있는 지분율</u>을 합산하여 기재
  - \* [주의사항] 양식①의 총수일가지분율과는 달리 <u>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의미</u>

#### <작성양식 3>

(금년도 지정일 기준)

국외계열회사명 대표자명			설립일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D	2	3	4	5	6	7
합계	8	_	_	_	-	-	

- 1. ①에는 국외계열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명 또는 대표집행임원명을 당해연도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 단, 대표자가 집행임원인 경우 성명 옆에 "(집행임원)"을 붙임
- 3. ③에는 해당 회사의 설립일을 기재
- 4. ④에는 회사의 주력업종(또는 매출액 최다 업종)을 기재
- 5. ⑤에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 6. ⑥에는 소재국을 간단하게 기재 (예: 미국, 일본, 영국 등)
- 7. ⑦에는 해당 회사의 결산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 8. ⑧에는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회사의 총 개수를 기재

## 4 주주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을 동일인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등을 기재

#### □ 작성방법

- (동일인측 범주) 동일인, 배우자/혈족1촌, 혈족 2~4촌,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자기회사·국내계열회사·국내비영리법인), 자기주식, 계열회사(국내+국외) 등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 임워 기재방법

구분	기재방법
_,_,_,	등기임원제도가 있는 국가 : 자기회사의 <u>등기된 임원</u> 으로서, <u>주주인 자</u> 에 대해 기재
자기회사	등기임원제도가 없는 국가 : <u>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u> <u>제9호·제12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u> 로서, <u>주주인</u> <u>자</u> 에 대해 기재
국내계열회사, 국내비영리법인	<u>국내계열회사 및 국내비영리법인의 등기된 임원</u> 으로서, <u>해당 국외계열회사의 주주인 자</u> 에 대해 기재

O (기타주주 범주) 동일인측이 아닌 최다출자자, 기타

## □ 예외사유

O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다만 위의 사유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주로 소재국 근거 법률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이해돕기

- ☞「상법」제317조 (설립의 등기)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8. <u>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u>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u>감사</u>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양식 작성 돕기

- ☞ 동일인측이 최다주주인 경우
- (1)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2) 동일인측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기타주주(⑫번 칸)에 기재
- ☞ 동일인측과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공동 최다주주이거나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최다주주인 경우
- (1)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2)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의 지분을 ⑪번 칸에 성명과 주식수를 기재
- (3) 기타 소액주주의 지분에 대해 ⑫번 칸에 기재

#### <작성양식 4>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2 스코)	) Tel		드시	റിച്റ് ചിചി	2-l 1:H	보등	통주	우석	<u></u> 선주	합	계
소속회	TH3		동일	인과의 관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일인	1	2	3	4	5	6	7
				배우자/							
				혈족1촌							
			· 친	혈족2~4촌							
			족	인척 3촌 이내							
		동 일		⑧ 기타친족							
固	Α	일 인 축		⑨ 친족 합계	><						
금				비영리법인							
융	Α.			임원							
회				자기주식							
사				계열회사							
				(국내+국외)							
				타 동일인관련자							
				① 동일인측 합계	><						
		기타		동일인측이 아닌	11)						
		주주		최다주주							
				기타	>	12	1000/		1000/		1000/
	-			총 계		13	100%	13	100%	13	100%
<u></u>	В			***							
금융	C			***							
회사	D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1. ①의 '동일인'이란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
- 2. ②(④)와 ③(⑤)에는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에 대한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 [동일인 보유 보통(우선)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 보통(우선)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3. ⑥에는 ②와 ④의 합계를, ⑦에는 A회사 발행 총 주식수(보통주+우선주)에 따른 지분율을 기재.
- 4. ⑧의 '기타친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 5. ⑨에는 A회사에 대한 친족(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인척 3촌 이내 및 기타친족)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6. ⑩에는 동일인측[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국내+국외), 기타 동일인 관련자]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7. ⑪에는 동일인측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최다출자자)명을 기재하고 해당 주주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A회사에 대해 동일인측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측'란에 동일인측 주식수와 지분율을, 최다출자자는 '기타주주-동일인 측이 아닌 최다출자자'란에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8. ②에는 A회사 주주 중 ⑩과 ⑪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 합계와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⑪을 제외한 기타 주주 전체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9. ⑬에는 A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를 기재

## 5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국외 계열회사의 장부가액, 주식수, 지분율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 작성방법

-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하여 기재
- O「장부가액」 칸에는 금년도 지정일 기준 가장 최근(직전 분기말· 반기말·사업연도말)에 평가한 장부가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 금년도 지정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
- O 자기주식도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비율 및 장부가액을 기재

#### <작성양식 5>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 주, %, 백만원)

		출자회사	]	D	Е		I	न		
피출	·자회사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	(	D	•					
	Δ.	보통주	2	3						
국 내	Α	우선주	4	5						
계		합계								
열	В									
회 사	С									
^'F										
	장부가	액 소계	(	8						
	D	장부가액	(	6						
		보통주	6	6						
		우선주	6	6						
		합계								
국 외		장부가액	(	7						
계	E	보통주	7	7						
열	E	우선주	7	7						
회		합계								
사	F									
	장부가	8								
	ŏ	계	(	9						

- ※ 출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피출자회사 중 국외 계열회사는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국외 계열회사를 의미(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1. ①에는 D사(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가 보유한 A회사(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장부가액(금년도 지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장부가액)을 기재
- 2. ②(④)에는 D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보통주식수(우선주식수)를 기재하고, ③(⑤)에는 그 지분율을 기재
- 3. ⑥에는 D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을 기재
- 4. ⑦에는 D사가 보유한 E회사(국외 계열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을 기재
- 5. ⑧과 ⑨에 D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국외 계열회사의 장부가액 각각의 합계와 전체 장부가액의 합계를 기재

## ⑤ 국내외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 □ 작성방법

-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회사(국내+국외)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상호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공정거래법 제2조 제16호)
-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되, 그 중 순환출자고리 내에 국내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만을 대상으로 함
  - 순환출자고리의 시작과 끝을 국내 계열회사로 하여 작성하며, 순환출자고리 내에 국내 계열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총수일가 지분 보유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로 하여 작성
- O 「지분율」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

<작성양식 6>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 주)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	사5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②지분	·율			지분율				지분	율							
1	① A	주	보통주	3	В	주	보통주		C	주	보통주		Α						
		식	우선주	4		식	우선주			식	우선주								
		수	합계	(5)		수	수 합계			수	합계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지분율			지분율				지분	율			지분원	율				
2	A	大	보통주		В	주	보통주	F	С	_	보통주		D	주	보통주		Α		
	' \	주 식·	우선주			식	우선주			주 식	우선주		٥	식	우선주		^`		
		수	합계			수	합계			수	합계			수	합계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1. ①의 회사명에는 순환출자고리 내의 국내 계열회사를 기재하고, 국내 계열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총수일가 지분 보유회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회사)를 기재하며,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 2. 전체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2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ABC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피출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4. ③, ④, ⑤에는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하여 기재

# 5 공시절차

□ 동일인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순 서	방 법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ul> <li>○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li> <li>-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등록'을 선택하여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면제</li> <li>-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파일로 직접 첨부하여 제출</li> <li>- 제출인이 개인인 경우 제출인 본인인증 완료시 공동인증서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관련 서류 제출 면제</li> <li>○ 담당자의 업무처리 후(영업일 기준 최대 익일까지)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결과 확인</li> <li>※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DART인증서를 발급/폐기하기 위해 '비밀번호변경 코드'가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li> </ul>
	<ul> <li>**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등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li> <li>○ 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자료실'에서 '[S/W DART 편집기 설치본]'을</li> </ul>
2. S/W설치	다운로드 하여 설치 - 본 프로그램 설치 후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업데이트 파일이 추가로 설치됨
3. 인증서 발급 및 등록	<ul> <li>○ 공동인증서와 DART인증서 중 한 가지 사용</li> <li>- 공동인증서</li> <li>①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급</li> <li>② 접수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단의 '등록/재등록'을 클릭하여등록 신청</li> <li>③ 안내에 따라 나머지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li> <li>- DART인증서</li> <li>①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li> <li>② '인증서 관리-DART인증서 발급'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발급이완료됨</li> <li>※ DART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력하는 인증서 암호는 전자서명을 할 때사용되므로 반드시 숙지</li> </ul>

순 서	방 법			
4. 문서작성	<ul> <li>○ '윈도우 시작버튼 - 프로그램 - DART 제출소프트웨어 - DART편집기' 클릭하여 DART편집기 실행</li> <li>① '파일-새 문서'메뉴를 클릭후 서식을 열어 작성</li> <li>② 문서 작성이 끝나면 '도구-파일형식 검사'메뉴를 실행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li> <li>③ '파일-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메뉴를 실행하여 공시용 화면 점검</li> <li>※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전자문서제출요령'을 다운로드하여 참고</li> </ul>			
5. 전송파일 만들기	①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생성'메뉴 실행 ② 제출의무자 고유번호 입력하고 업무 및 보고서, 첨부파일 등을 선택 ③ 전송파일명 및 연락처 입력 ④ 전자서명 창이 뜨면 위의 순서 '[3] 인증서발급 및 등록'에 따라 발급 / 등록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⑤ 전송파일(DRT)이 생성됨			
6. 전송파일 제출 및 결과확인	<ul> <li>이 위의 순서 '〔5〕 전송파일 만들기' 완료 후 바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거나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제출'메뉴를 실행하면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제출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함</li> <li>- 또는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문서제출-신규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접수여부를 확인</li> <li>※ 첨부서류만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추가 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제출</li> <li>※ 접수시간 : 평일 07:30 ~ 19:00</li> <li>- 당일접수 : 07:30 ~ 18:00</li> <li>- 익일접수 : 18:00이후~19:00(★공시기한 마지막날 18시를 넘지말 것)</li> </ul>			
7. 공시열람	ㅇ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서 조회			
※ 문의전화	<ul> <li>공정위 소관 공시제도 안내         <ul> <li>전화번호: 044-200-4869</li> </ul> </li> <li>제출S/W 및 접수・공시홈페이지 사용법 안내(금감원 전자공시 안내)         <ul> <li>전화번호: (국번없이) 1332 (5번 → 1번 → 1번)</li> </ul> </li> <li>※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의 전자문서제출요령 참고</li> </ul>			

# 6 수탁기관의 업무

- ◆수탁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서의 수신 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O 수탁기관은 동일인이 제출한 공시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O 공시사항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위반시 제재

7

- □ 동일인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 내용의 정정'등 시정명령 부과
  - O 공정거래법 제130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 별표9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참고> 시행령 별표9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71511 7 7 01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시하 경으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